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류 충돌 예방 〉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17호)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29호)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94호)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96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문위원 임 종 수

목 차

I. 박용갑의원 대표발의(2207117)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박용갑의원 대표발의(2207429)	3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김예지의원 대표발의(2207894)	4
1. 제안경위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IV. 조지연의원 대표발의(2207996)	5
1. 제안경위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V. 제안배경	6
VI. 검토의견	8
1. 조류 탐지 레이더 등 설치 의무화(박용갑의원안(2207117) 제2조제17호 및 제43조제1항)	8
가. 개정안의 내용	8
나. 검토의견	9

다. 관계기관 의견	11
1) 국토교통부	11
2) 한국공항공사	12
2. 조류 유인가능시설 이전명령 근거 마련 등(박용갑의원안(2207429)	
제56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8호 신설)	13
가. 개정안의 내용	13
나. 검토의견	16
다. 관계기관 의견	23
1) 국토교통부	23
2) 법제처	23
3) 한국공항공사	25
3. 조류충돌 방지 전문인력 운영 등(김예지의원안 제56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7호, 조지연의원안 제56조의4)	26
가. 개정안의 내용	26
나. 검토의견	27
다. 국토교통부 의견	30

I. 박용갑의원 대표발의(2207117)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4. 12. 31.

다. 회 부 일 : 2025. 1.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불시착 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 당시 공항 활주로 상공에는 다수의 조류가 비행하고 있었으나, 공항에는 조류 탐지 레이더, 열 화상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항 관제탑에서는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사고 고작 1~2분 전에 항공기에 통보할 수 있었고,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조류 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전 조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됨.

반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09년 조류 충돌로 인한 뉴욕 허드슨강 항공기 불시착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2년 미국 공항에서 조류 탐지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FAA 현대화 및 개혁법을 제정해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비용을 공항 개선 프로그램

보조금(AIP)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미국 연방항공청이 조류 탐지 레이더 등을 도입한 이후,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사고는 2010년 9,905건에서 2019년 1만 7,228건으로 약 1.7배 증가했으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률은 2010년 6.0%에서 2019년 4.1%로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음.

또 일본 국토교통성도 2011년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1,600건이 발생하고, 하네다공항에서만 240건이 발생하자, 2012년 하네다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시스템(BIRDS)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히스로공항,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도 조류 충돌 방지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을 비롯하여 국내 15개 공항 중 단 1개 공항도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조류 충돌사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및 제43조제1항 등).

II. 박용갑의원 대표발의(2207429)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 10.

다. 회 부 일 : 2025. 1.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문가들은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현행법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금지시설이 115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조류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금지시설을 설치, 조성한 자에 대한 이주 보상 및 제재 처분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한 이전명령과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8호 신설).

Ⅲ. 김예지의원 대표발의(2207894)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2. 4.

다. 회 부 일 : 2025. 2.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는 국내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를 위한 전문인력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등).

IV. 조지연의원 대표발의(2207996)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조지연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2. 7.

다. 회 부 일 : 2025. 2.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류 등 야생동물 위험관리를 포함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Bird Strike)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공항의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조류충돌로 인한 사고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관련 장비 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V. 제언배경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은 무안공항에 착륙기
어 장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하였고, 활주 중 활주로를 초
과하였으며, 방위각(Localizer¹⁾) 시설물과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항공기가 전소하는 등 사
고가 발생하였음.

동 사고는 착륙 과정에서 조류 충돌이 발생²⁾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사고의 원인 중 일부라는 지적³⁾이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조류충돌은 항공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최근 5년간 공항
별 조류 충돌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운항편수가 적었던
최근 5년간에도 조류 충돌건수가 1,100여 건에 이르고, 조류 충돌 건수
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임.

1)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와 기체의 방향각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2) 연합뉴스TV, 국토부 "제주항공 사고기, 조류 충돌 확인...엔진서 깃털", 2025.1.8.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108001700641?input=1825m>

다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조류 충돌 시점은 분석 중으로 현재
까지 파악되지 않았으며, 항공기는 복행 중 08:58:56초에 조류 충돌로 인해 복행을 하고 있다
고 비상선언(Mayday, 3회)을 하였음. 또한, 항공기는 활주로 01 접근 시 조류무리를 확인하고
복행 중 조류와 근접하는 장면이 감시카메라(CCTV)에 확인되었고, 엔진 조사 중에 양쪽 엔진
에서 깃털이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깃털과 혈흔을 국내 전문기관에 유전자 분석의뢰한 결과
깃털과 혈흔은 '가창오리' 종으로 파악되었음.

3) 연합뉴스, '사고 원인'은 조류충돌, '참사 원인'은 둔덕...규명 초점, 2025.1.5.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5027500054>

【 공항별 조류 충돌 현황 】

(단위 : 건)

공 항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1월까지	계
인천	25	19	35	57	99	235
김 포	40	59	57	52	44	252
김해	18	43	47	51	51	210
제 주	38	52	33	54	44	221
대 구	6	11	9	9	9	44
울 산	6	6	4	2	1	19
포항경주	0	3	2	0	0	5
광주	13	7	8	8	7	43
여수	5	3	4	3	2	17
사천	0	1	0	3	3	7
청주	1	10	13	14	10	48
원주	0	0	0	0	0	0
군산	0	1	2	2	2	7
무안	1	0	1	2	5	9
양양	1	4	1	0	0	6
계	154	219	216	257	277	1,123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각 개정안은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조류유인 시설의 이전명령 근거 마련, 조류충돌 방지 전담인력 운영 등을 통해 조류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임.

VI. 검토의견

1. 조류 탐지 레이더 등 설치 의무화

(박용갑의원안(2207117) 제2조제17호 및 제43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행안전무선시설 등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항행안전시설 중 하나인 항행안전무선시설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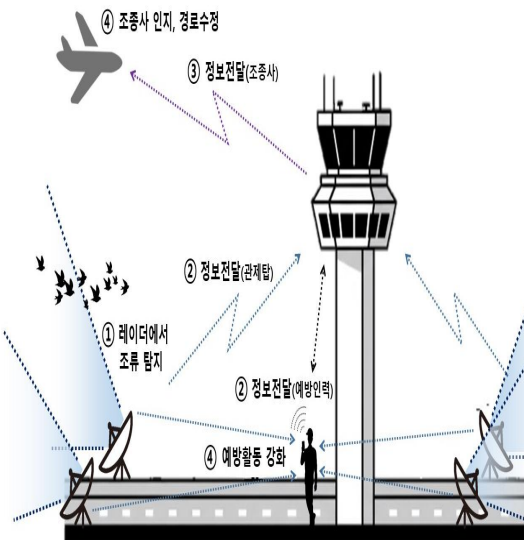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략) 17. “항행안전무선시설”이란 <u>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u> 18. ~ 20. (생략)	제2조(정의) ----- -----. 1. ~ 16. (현행과 같음) 17. ----- <u>전파와 열화상 카메라 등을 ----- 조류 충돌 방지 등 항공기의 항행을 -----</u> -----. 18. ~ 20. (현행과 같음)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① <u>항행안전시설(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외의 것</u> <u>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6조</u> <u>까지에서 같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u>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포함</u>

현행	개정안
<u>설치한다.</u> ② ~ ⑤ (생략)	<u>한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조류 탐지 레이더 등 조류 충돌 방지시설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공항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조류를 감지하는 장비로는 레이더를 사용하여 공항 주변의 조류 이동을 실시간 파악한 후, 관제사, 예방인력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조류 탐지 레이더, 새벽 및 야간시간대 열 추적을 통해 조류(야생동물)의 위치, 수, 이동방향 등을 확인하는 열화상 카메라 등이 존재함.

구분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설명	○ 레이더를 사용하여 공항 주변의 조류 이동을 실시간 파악한 후, 관제사, 예방인력 등에 정보를 제공 - (정보수집 절차) ① 레이더를 통해 조류의 위치·고도를 측정 → ② 측정 데이터를 컴퓨터 송부 → ③ 모니터에 표출 * 예방인력은 소형 단말기(휴대)를 통해 조류의 서식처나 수량 파악 가능	○ 시야가 제한되는 새벽 및 야간시간대 열 추적을 통해 조류(야생동물)의 위치, 수, 이동방향 등을 확인 - 장점 : 야간시간대 야생동물 탐지 능력 강화,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휴대성 용이 - 단점 : 고배율이 지원되지 않아 조류의 종이나 원거리 조류 확인 불가
도입 현황	○ 독일 브란덴브루크 공항,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항, 스페인 빌바오 공항 등에서 도입 ※ 국내 공항은 도입 사례 없음	○ 김포·김해·제주공항 각 1대, 인천공항 4대
사진		

자료 : 국토교통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류 탐지레이더의 경우 전국 공항(15개) 설치비용으로 8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열화상카메라의 경우 대당 구매비용이 250~380만원 수준임.

한편, 현행법 제43조제1항의 취지는 최초 공항건설 시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 외의 항행안전시설, 즉 공항 건설 이후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 조문을 신설하거나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 조류 충돌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신설되는 공항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항에 대해서도 조류 충돌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항행안전무선시설은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 국제규정에 근간한 국제표준시설로 구성되므로,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탐지기 등 조류충돌 방지시설을 항행안전무선시설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반면 현행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항공기 운항 및 공항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공항시설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류 탐지 레이더 등 조류 충돌 방지시설을 공항시설에 포함토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항개발사업을 통해 해당 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한국공항공사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0에서 항행안전무선시설은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도정보 또는 위치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시설로 정의됨. 이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은 항법지원장비로 계기착륙시설(ILS),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DME)로 대표되며, 열화상 카메라 및 조류탐지레이더는 항행안전무선시설로 분류되지 않음.

조류충돌 방지시설은 항공기의 항법정보를 제공하거나 방향 유도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기본 정의 및 역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류충돌 방지시설로 분류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조류 유인가능시설 이전명령 근거 마련 등(박용갑의원안 (2207429) 제56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8호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법 제56조제5항⁴⁾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시설에 대해서 국가 등이 이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명령 시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며,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시설 관련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며,

제재조치가 미비한 법 제56조제5항 위반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56조의4(금지시설 이전명령 및 토지 수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제56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금지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제1항에 따라 금지시설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금지시설 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이전비용이 그 물건이나 시설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제56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 외에 금지시설 이

현행	개정안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u> <u>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금지시설 등의 소유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있는 토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u> <u>⑥ 제5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69조(과태료)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u>8.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공항시설법」 제56조제5항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⁵⁾은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양돈장, 과수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가 미비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항에 해당 조항을 위반한 시설이 11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5)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 ③ 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야생동물) 유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사과·배·감 과수원(다만, 사과·배·감 과수원 외의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조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땅에 떨어진 과실에 대한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잔디재배, 조류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사냥금지구역, 승마연습장, 경마장, 야외극장, 드라이브인 음식점, 식품가공공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2.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사냥금지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 2024년 공 항 별 조류유인시설 현황 】

구분		계	인천	김포	제주	청주	양양	군산	원주
총계		115	6	29	-	6	15	6	8
3km 이내	계	96	5	28	-	5	15	6	6
	양돈장	6	-	-	-	-	-	-	2
	과수원	40	2	-	-	3	15	4	2
	잔디재배	1	-	-	-	-	-	-	-
	드라이브인 음식점	-	-	-	-	-	-	-	-
	식품가공공장	43	3	28	-	2	-	2	2
	승마연습장	2	-	-	-	-	-	-	-
	경마장	-	-	-	-	-	-	-	-
	장터	-	-	-	-	-	-	-	-
	야외극장	-	-	-	-	-	-	-	-
	조류보호구역	2	-	-	-	-	-	-	-
	사냥금지구역	-	-	-	-	-	-	-	-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	-	-	-	-	-	-	-
	계	19	1	1	-	1	-	-	2
3~8km	조류보호구역	10	1	-	-	-	-	-	-
	사냥금지구역	-	-	-	-	-	-	-	-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9	-	1	-	1	-	-	2

구분		김해	대구	광주	울산	여수	무안	포항	사천
총계		2	4	2	8	4	12	3	10
3km 이내	계	1	-	-	5	3	12	1	9
	양돈장	-	-	-	-	1	3	-	-
	과수원	-	-	-	4	-	7	-	5
	잔디재배	-	-	-	-	-	1	-	-
	드라이브인 음식점	-	-	-	-	-	-	-	-
	식품가공공장	1	-	-	1	1	1	-	2
	승마연습장	-	-	-	-	1	-	1	-
	경마장	-	-	-	-	-	-	-	-
	장터	-	-	-	-	-	-	-	-
	야외극장	-	-	-	-	-	-	-	-
	조류보호구역	-	-	-	-	-	-	-	2
	사냥금지구역	-	-	-	-	-	-	-	-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	-	-	-	-	-	-	-
	계	1	4	2	3	1	-	2	1
3~8km	조류보호구역	-	3	-	3	1	-	2	-
	사냥금지구역	-	-	-	-	-	-	-	-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1	1	2	-	-	-	-	1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이와 같은 위반시설에 대한 이전명령 근거를 신설하면서 수용·사용 및 국공유지 교환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미비하였

던 위반시설 등 설치 시 제재조치로서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항 인근 조류 유인을 예방함으로써 항공 안전을 도모하고, 지난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56조의4제1항은 이전명령 등 처분의 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아닌 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범위의 처분 주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56조의4제1항은 이전명령 등 조치의 대상을 ‘금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시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안 제56조의4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보상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⁶⁾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이전보상을 참고한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것으로 보이고, 유사입법례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보상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⁷⁾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그리고 안 제56조의4제3항은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권리 등에 대한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전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유사입법례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4항에 따라 토지 수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것인데, 동법은 수용에 앞서 사업인정을 받을 것을 규정⁸⁾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사업인정의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대상이 무엇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안 제56조의4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금지시설 등의 소유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있는 토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공유지 교환을 규정한 「자연공원법」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이는 주로 협의 매수와 함께 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매수를 위해 지불할 예산이 부족한 경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등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광업권,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안 제69조제1항제8호는 미비한 제56조제5항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인데, 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56조의4제1항에 따른 이전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벌칙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도시가스의 공급중지·제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 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31조에 따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조류 유인시설 설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지시설에 대한 이전명령 및 이에 따른 보상 근거 마련에 동의함.

다만, 토지수용은 타법 사례⁹⁾(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등)와 같이 협의매수를 통해 이전을 유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전명령 및 토지수용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 초래를 방지하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 교환 주체에서 권한이 없는 공항운영자와 비행장시설 관리·운영자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법제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관점에서 행해지는 재산

9)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5조(협의를 따른 토지 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등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광업권,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연안관리법」

제34조의5(토지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상 보상을 의미하고, 토지보상법은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로서 헌법 제23조¹⁰⁾에 따라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을 구체화한 것임¹¹⁾.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려는 경우는 법 제56조제5항의 위반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손해에 관한 손실보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별표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안 제56조의4에서는 시설 이전 등의 조치 명령(제1항), 토지 등의 수용·사용(제3항)의 권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외에 무엇이 있는지 가급적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년판) p 540

3) 한국공항공사

공항운영자는 금지시설(사유재산)에 대하여 이전명령, 이전비용 보상, 수용·사용,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국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으로 한정할 필요 있음.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¹²⁾ 및 별표에 따라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위하여는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나, 상기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조류유인시설 부지 또는 시설은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없음. 이를 위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등)에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협의 매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 있음.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3. 조류충돌 방지 전문인력 운영 등(김예지의원안 제56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7호, 조지연의원안 제56조의4)

가. 개정안의 내용

김예지의원안은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조지연의원안은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	김예지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신설>	제56조의4(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의 운영 등)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운영하여야 하며,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 환경 등을 반영한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운영의 기준 및 계획 수립의 시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4(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명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수는 공항 운영시간, 운영하는 활주로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제69조(과태료) ① -----	제69조(과태료) (현행과

현행	김예지의원안	조지연의원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신설> ② ~ ⑥ (생략)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5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인력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¹³⁾」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 조류충돌 위

13) 「공항시설법」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시설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10. 19.>

공항시설·비행장시설 관리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0. 공항 및 공항 주변에서의 항공기 운항 시 조류충돌을 예방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

협관리 계획의 수립 근거를 상향입법하고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장비 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4호, 2022. 11. 8., 일부개정.]

제8조(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① 각 공항의 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 ① 공항운영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항 운영시간, 운영하는 활주로의 수에 따라 적정한 조류 충돌예방 전담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되, 그 인원의 수는 최소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 이·착륙이 불가능한 복수활주로 및 교차활주로는 매 두개의 활주로 중 하나를 0.5개로 보아 적용한다.

적용 활주로 수	운영시간	9시간이하	9시간 초과 18시간 이하	18시간 초과
1개		4명	8명	12명
1.5개		6명	12명	18명
2개		8명	16명	24명
2.5개		10명	20명	30명
3개		12명	24명	36명
3.5개		14명	28명	42명
4개		16명	32명	48명

제30조(조명탄의 사용) 조류 충돌예방용 조명탄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 (생략)

제31조(총기류의 관리) 조류 충돌예방용 총기류는 규칙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총기 속

약」 부속서 14에서 정한 조류충돌 예방계획(오물처리장 등 새들을 모이게 하는 시설 또는 환경을 만들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인원·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습기와 녹이 슬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총기류의 안전관리) 조류 충돌예방용 총기류의 안전취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제33조(폭음기의 안전관리) 조류 충돌예방용 폭음기의 안전취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지난 2월 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조류 충돌 위험관리 인력의 운용이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음.

현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법적 근거인 「공항시설법」 제31조14)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한데, 김예지의원안은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수립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조지연의원안은 별도 제재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4) 「공항시설법」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시설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10. 19.>

공항시설·비행장시설 관리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0. 공항 및 공항 주변에서의 항공기 운항 시 조류충돌을 예방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서 정한 조류충돌 예방계획(오물처리장 등 새들을 모이게 하는 시설 또는 환경을 만들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인원·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이 경우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과태료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김예지의원안에 따라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동의함. 다만, 조류충돌 예방활동(전문인력 운영 등)은 「공항시설법」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안을 「공항시설법」 제31조의5로 신설하고, 같은 법 내 일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공항시설법」 제56조¹⁵⁾와 동일하게 ‘조류충돌사고 방지’를 ‘조류충돌 예방’으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0

15)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